

II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안내

1.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개요

○ 정부 부처별 보조기기 지원제도 시행(4부 1처)

부처	사업명		수행기관	지급대상	급여내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상한액범위 90% 지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한액범위 전액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내 전액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연 160만원 내 소득별 차등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애인	전액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록장애 근로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등록장애인	구입가격 내 80~90% 지원
교육부	학습보조기기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학생	학교에 지원
국가보훈처	보철구 지급		보훈처 보훈병원	국가유공 장애인	전액지원

○ 목 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교부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심장·호흡·발달·시각·청각·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제한

- 타 지원사업(공적급여, 민간급여)을 통해 동일 유형의 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자
 - 교부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일 유형 기기가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 재교부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 당해 1인 1품목 지원 원칙이나, 5만원 이하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중복 지원 가능

○ 교부우선순위

1. 장애 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3. 1가구 내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4.

2022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참고사항

○ 교부품목 확대

품목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내구연한	사진	
대체 입력장치 (스위치) (3 22 36 12)	뇌병변	5만원	3년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 (낙상알람기) (3 22 27 18)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55만원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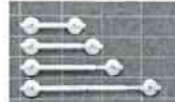
○ 기타품목 신청 안내

- 지정된 교부품목 교부 후 9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구·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추진
-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당해 연도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함(2022 기준 150만원)
- 교부한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 최종실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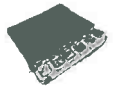
기타품목 예시

			
치료용 벤치	이승보조기기	착석보조기기	장애아동용 카시트

○ 교부사업 등록 품목별 안내(36개 품목)

장애유형	품목	지원 기준액	기능	사진 및 예시	
지체·뇌병변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30만원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이동보조기기 진입의 접근성 향상		
	목욕의자	60만원	신체 균형능력 저하 및 자세유지 제한으로 목욕이 어려운 경우		
	이동변기		신체 균형유지능력 저하로 독립적인 이뇨 및 배뇨활동,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보행차	20만원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 도모 양팔로 체중지지 시 보행이 가능한 자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 내 세 분류로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 가능하고,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25만원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변기 움거 앉기를 도움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10만원	이동·자세 유지를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핸드레일, 지지레일 제외)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150만원	기립 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 강화 및 자세 변형 완화		
	환경 제어 장치	40만원	실내에 있는 사물이나 기기를 컨트롤 장치를 이용하여 제어	현관도어락 리모컨	전등스위치
	음식섭취보조기기	5만원	취기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팔의 굽힘이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손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자		
	접시 및 그릇		힘이 있어 한 손으로 음식을 담기에 편리		

장애유형	품목	지원 기준액	기능	사진 및 예시	
지체·뇌병변	음식 보호대	5만원	음식을 수저에 닿는 데 도움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	보조인이 추진 및 조종하는 이동보조기기 눕거나 앉은 자세로 탑승 가능하며, 벨트류 등으로 신체를 지지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80만원	특수 착석 요구에 맞춘 자세유지용 기기, 받침대, 체간 및 골반 고정용 벨트로 구성된 착석 보조기기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만원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 예방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전동침대)	120만원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한 침대 체위변환을 돕고 보호자의 이동 부담 감소 등 일상생활 지원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낙상 예방을 위한 탑승자 고정장치 벨트류, 덮개류, 거치대류 등 해당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만원	이동보조기기를 활용하며 움거앉기가 어려운 사람을 슬라이딩 기술을 활용하여 위치 및 방향을 변환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15만원	휠체어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제작된 신발 및 옷 이동기기용 우의, 방한담요 등 해당		
	소변수집장치	120만원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 배뇨 처리 가능 (소모성 소변수집장치 불가)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 (낙상알림기)	55만원	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 제공		
뇌병변·지적· 자폐성· 청각·언어	대화용장치	60만원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 또는 비전자기기		
뇌병변	대체입력장치(스위치)	5만원	원하는 항목의 직접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간접적으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음		

장애유형	품목	지원 기준액	기능	사진 및 예시	
심장	육창예방 방석	35만원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피부를 보호하여 육창 예방		
	육창예방 매트리스				
청각	신호장치 (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	청각적 외부 신호를 빛 또는 진동으로 변환		
	헤드폰(청취증폭기)	12만원	소리를 증폭시켜 청취 가능한 경증 청각장애 보유자가 사용		
	진동시계	5만원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시각	녹음 및 재생장치	50만원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80만원	사물 또는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여 물체의 확대 영상 출력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음성유도장치	3만원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 작동		
	음성시계		버튼을 눌러 시간을 음성으로 알림		

※ 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품목정보안내서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 가능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및 기타 보조기기 관련 문의사항

- 전 화 : 032-540-8989, 8946~8
- 이 메 일 : icatc@naver.com
- 홈페이지 : www.icatc.or.kr
- 플러스친구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icatc